

섹션 1557: 제한된 영어 유창성을 지닌 개인에게 유의미한 접근권 제공

섹션 1557은 Affordable Care Act(ACA, 부담적정보험법)의 공민권법 조항입니다. 섹션 1557은 인종, 피부색, 국적, 성별, 연령 또는 장애를 근거로 특정 건강 프로그램 및 활동상의 차별을 금지합니다. 섹션 1557 최종 규칙은 Medicare 환자를 받는 병원이나 Medicaid 지급금을 받는 의사, 건강 보험 마켓 플레이스 및 마켓 플레이스에 참여하는 보험 발행사,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(HHS, 보건복지부)가 자체로 실시하는 일체의 보건 프로그램 등 HHS로부터 자금을 수령하는 일체의 보건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적용됩니다.

제한된 영어 유창성을 지닌 개인을 위한 보호조치

- 이 최종 규칙은 공민권법에 따른 오랜 역사를 지닌 원칙에 부합하여, 해당하는 주체가 해당 보건 프로그램 및 활동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거나 그러한 프로그램 및 활동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제한된 영어 유창성을 지닌 개인에게 유의미한 접근권을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국적 차별 금지를 명시합니다.
 - o 제한된 영어 유창성을 지닌 개인이란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영어가 아니며 영어 읽기, 쓰기, 말하기 또는 이해 능력이 제한된 사람을 말합니다.
 - o 합리적인 조치에는 구두상의 언어 지원 또는 번역문과 같은 언어 지원 서비스의 제공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
 - o 최종 규칙의 기준은 유연하며 보건 프로그램의 성격과 중요성, 문제의 커뮤니케이션, 해당 주체가 효과적인 언어 이용 계획을 마련 및 시행했는지 여부와 같은 요인 등을 고려해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.
- 해당 주체는 특히 개인의 권리 안내문을 게시해 제한된 영어 유창성을 지닌 개인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지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.
- 각각의 주에서, 해당 주체는 해당 주에서 제한된 영어 유창성을 지닌 개인들이 사용하는 상위 15개 언어로 태그라인을 게시해 언어 지원이 가능함을 표시해야 합니다.
- 해당 주체는 질이 떨어지는 동영상을 통해 원격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직원, 번역가를 통해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.
- 해당 주체는 지원이 필요할 수 있는 개인에게 유의미한 접근권을 제공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 준비를 위해 언어 이용 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이 권장됩니다.

OCR(시민권 사무국)은 샘플 비차별 안내문과 해당 주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태그라인을 64개 언어로 번역했습니다. 번역된 자료를 참조하려면 <http://www.hhs.gov/civil-rights/for-individuals/section-1557/translated-resources/index.html>을 방문하십시오.

섹션 1557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<http://www.hhs.gov/civil-rights/for-individuals/section-1557>을 참조하십시오.